

의안
번호

37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73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17조제6항)

나.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안 제17조제1항, 별표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1일 → 3일)

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근무시간, 연가·병가·공가 사용 규정, 특별휴가 등 중복된 내용 삭제
- [별표 5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

라. 기타 용어 정비(안 제3조, 제17조,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9. 19.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생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7조(특별휴가) 및 별표5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6항 신설 및 별표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특별휴가)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별 표 3〉			〈별 표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생일 특별휴가는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생일 특별휴가 시행 현황 (2024. 11월 기준)

시행 (14)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미시행 (11)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24. 7. 2. 시행) 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일수(1일 → 3일)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에도 경조사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8개 구가 특별휴가 3일을 시행하고 있으며, 9개 구에서도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 시 휴가 확대를 위해 입법예고를 완료 상태로 ‘생일 특별휴가 신설’과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타 자치구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원 복지 증진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려해 필요성 있다고 사료 됨.

서울시 자치구별 경조사 휴가일수 시행 현황 (2024. 11월 기준)

시행 (7)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입법예고 완료 (9)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검토 및 예정 (4)	금천구, 서초구, 구로구(1일), 송파구(1일)

- 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21개 조문 개정은 현행조례에 규정된 근무시간, 연가·병가·공가 사용 규정, 특별휴가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8조(출장공무원) 제13조(근무시간)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의 근무)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20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2조(병가) 제23조(공가) 제24조(특별휴가) ②~⑦, ⑨, ⑪, ⑭, ⑮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본조 삭제〉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8조(겸직허가) 제29조(정치적 행위) 제30조(시행규칙) [별표5]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기준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이므로 우선 적용됨에도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 및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또한,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운용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규정 사항이 모든 자치단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의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그 밖의 안 제3조 및 제17조, [별표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24. 7. 2..시행)으로 특별휴가를 기관장이 부여하는 개념이 아닌 직원이 사용하는 개념의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 안 제3조, 제17조 및 [별표3] 개정 전·후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	제17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5의 기준에 따른

<p>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② ~ ⑦</p> <p>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⑨ ~ ⑪</p> <p>⑫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을 따른다.</p> <p>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 ⑦ 조항 삭제</p> <p>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 <p>⑨ 조항 삭제</p> <p>⑩ 현행 유지 → ③ 조항</p> <p>⑪ 조항 삭제</p> <p>④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
<p>[별표2] 공직자의 행동률</p>	<p>[별표3] 공직자의 행동규범</p>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와 현행 조례 가운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전체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됨.